

선거관리규정

2008년 1월 8일 제 정
2013년 10월 15일 4차 개정
2015년 2월 12일 5차 개정
2016년 2월 2일 6차 개정
2016년 4월 14일 7차 개정
2016년 11월 3일 8차 개정
2018년 8월 16일 9차 개정
2020년 11월 20일 10차 개정
2020년 12월 8일 11차 개정
2021년 8월 13일 1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제1항과 제36조제6항 및 시·도회설치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회장 및 시·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의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정관 및 시·도회설치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일) ① 회장 선거일은 직전 회장의 임기만료일 60일전(시·도회장 선거는 15일전)에 개최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일로 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일은 회장이 궐위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일로 한다.(’10.10.13, ’13.10.15, ’18.8.16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은 선거일 20일(공휴일 포함)전까지 이사회(시·도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확정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방법) ① 회장 선거는 후보자들 중에서 선거일에 총회에 출석한 구성원(이하 “출석구성원”이라 한다)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거수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및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없을 때의 회장 선출방식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10.10.13 개정)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회장의 선거권은 총회(시·도회장 선거는 당해 “시·도회 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인정하되, 회장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21.8.13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5.2.12 개정)
2.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행사가 제한된 경우

제6조(피선거권) ①회장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10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에 한하며, 시·도회장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해 시·도회 관내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회원으로 있는 자(정관 제9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한한다.(’21.8.13 개정)

②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체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선거권 제한) 정관 및 관계법령에 의거 회장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 행사가 제한된다.(’10.10.13, ’13.10.15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5.2.12 개정)
2.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정관 제9조제4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5. 이미 1회 이상 회장직(시·도회장 선거는 시·도회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 이 경우 임기 중에 사임 등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1회로 보며, 정관 제16조 제4항 후단과 제36조 제8항 후단은 1회로 보지 아니한다.(’20.11.20 개정)
6.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0.10.13 신설)

제7조의2(임원 등의 입후보) ①정관 제13조의 협회 임원, 시·도회장 및 대의원 중 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60일전에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13.10.15 신설, ’16.2.2, ’16.4.14 개정)

② 시·도회설치규정 제7조의 시·도회 임원 및 제12조의 대표회원 중 시·도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 45일전부터 시·도회장 선출일까지 그 직위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지(정관 제13조, 제20조, 제33조 및 시·도회설치규정 제12조에 따른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그 직위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 포함)한다. (’13.10.15 신설, ’16.2.2, ’16.4.14, ’18.8.1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 의사 통보서를 선거일 45일전까지 회장에게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18.8.16 신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직무는 시·도회 설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 대행한다. 다만, 정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직위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18.8.16 신설)
- ⑤ 회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서를 제출한 예비후보자의 직위, 상호, 성명, 직무집행 정지의 사실, 정지기간 등을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해 시·도회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8.8.16 신설)
- ⑥ 회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무를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사무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18.8.16 신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본회 또는 해당 시·도회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선관위는 회장 선거일 40일전까지 설치되어야 한다.('10.10.13, '13.10.15 개정) 다만,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결정일까지 설치되어야 한다.('11.3.15 개정)

제9조(선관위의 성격 및 존속기간) ①선관위는 독립하여 그 사무를 집행한다. 단, 제11조제7호의 제재조치는 이사회가 기준을 정하여 선관위에 제시할 수 있다. ('16.11.3 개정)

②선관위는 당해 회장 선거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16.11.3 개정)

제10조(선관위 구성 및 운영) ①선관위는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사회가 회원(시·도 회장선거는 당해 시·도회 소속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10.10.13, '13.10.15 개정)

②선관위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3.10.15 신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당해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원을 추가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10.10.13, '13.10.15 개정)

④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⑤선관위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당연직 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10.15 개정)

⑥회원지위를 상실하거나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한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하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10.10.13 조문정리)

⑦위원이 사퇴하거나, 제6항에 의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선출하되, 잔여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0.10.13, '13.10.15 개정)

⑧총회에 회장의 선출 의안이 상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의안에 한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

행한다. 단,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선관위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한다.(‘13.10.15 개정)

⑩위원장은 협회 직원들 중 일부를 선거사무에 종사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시·도회 선관위 구성 및 운영) ①시·도회 선관위는 시·도 감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회 운영위원회가 당해 시·도회 소속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 6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13.10.15 신설)

②제1항의 경우 시·도 감사가 당해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위원 1인을 추가 선출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취임 후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을 보궐선출한 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3.10.15 신설)

③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13.10.15 신설)

④시·도회 선관위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시·도회 사무처장으로 한다.(‘13.10.15 신설)

⑤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은 시·도회 선관위에 준용한다. (‘13.10.15 신설)

제11조(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 및 요건 심사 후 등록증 교부, 후보자 자격심사
 2. 선거 특별회비 수납 및 관리(‘13.10.15 개정)
 3. 선거인 명부 확정
 4. 투·개표관리 (‘10.10.13 조문정리)
 5. 투표의 유효·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7. 선거운동 제한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 조사 및 조치(경고·시정지시·등록취소·당선무효 등 제재) (‘15.2.12 개정)
 8. 당선자 결정·선포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② <삭제> (‘10.10.13 조문정리)

제12조(선관위의 선거사무관리) ①후보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선관위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후보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제2항에 의거 경고 또는 시정지시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납부한 선거 특별회비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 또는 시·도회의 예산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0.10.13, '13.10.15 개정)

제13조(선관위 회의운영) ①선관위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선거일정의 차질이 우려되어 이사회 의결로 요구한 경우
- ②위원장이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5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20.12.8 개정)
- ③선관위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8 개정)
- ④선관위가 심의 결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있다.('20.12.8 개정)

제14조(공정한 선거관리의무) 선거관리위원·간사 및 사무직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10.10.13 조문정리)

제 4 장 선거일, 선거공고 등

제15조(선거공고)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0일전까지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및 건설경제신문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목적(회장 또는 시·도회장 선거)
2. 선거일시 및 장소
3. 후보자 자격요건
4. 후보자 등록장소
5. 후보자 등록기간
6. 후보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3조제3항에 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후보자 등록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10.10.13 조문정리)

제16조(선거인명부 작성 등) ①선관위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각 시·도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본회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자를 총회 구성원에 포함하여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동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

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제2항의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시 제5조 각 호의 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 5 장 후보자등록

제17조(후보자 등록) ①회장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18조의 선거 특별회비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10.10.13, ’13.10.15, ’15.2.12 개정)

1. 서약서(별지 제1-1호) 1부
2. 이력서(별지 제1-2호) 1부
3. 명함판 사진3매
4. 제19조에 의한 선거권자 추천서(선관위가 교부한 용지에 한함) 및 추천인 명단 각 1부
(‘10.10.13 신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6. 협회 임원의 경우 임원 사임서 및 개인인감증명서(‘13.10.15 신설)
7.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선관위는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서(첨부서류 포함)와 선거 특별회비를 접수한 경우 요건심사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인장규정 별표 1의 선거관리위원장인을 날인한 후보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0.10.13, ’13.10.15 개정)

제18조(선거비용 특별회비) ①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5천만원, 시·도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시·도회 총회가 정하는 금액의 선거 특별회비를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10.10.13, ’13.10.15 개정)

②선관위는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거 특별회비 전액을 반환한다. (‘10.10.13 신설, ’13.10.15 개정)

③제20조 및 제21조의3에 의해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선거 특별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0.10.13 신설, ’13.10.15, ’15.2.12 개정)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반환되지 않은 선거 특별회비는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선거사무관리비용으로 집행 후 잔액은 본회 또는 해당 시·도회에 귀속한다. (‘10.10.13, ’13.10.15 개정)

제19조(선거권자의 추천) ①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 5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구분한 등분별 및 지역별 일정수 이상의 추천이 포함되어야 한다.(‘12.2.14 개정)

- ②시·도회장 후보자 등록시 선거권자 추천기준은 해당 시·도회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선거권자 1인당 2인 이상의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10.10.13 신설)

제20조(후보자 등록의 취소 등) ①후보자는 선거일에 투표(2차투표 및 재투표 포함)를 실시하기 전까지 사퇴할 수 있으며,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증을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선관위에 제출하거나,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의사를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10.10.13, '15.2.12 개정)

②대리인이 제1항에 의한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5.2.12 개정)

③후보자 등록을 한 자가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7조에 의하여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선관위는 후보자가 제17조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재사항 중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어 후보자 등록기간 내 보완을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활동

제21조(선거운동 제한) ①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업계의 분열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2.12 개정)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공론화되어 있는 협회의 사교·친목모임에서 통상적인 각출 또는 순번에 의한 경비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부담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 신문, 잡지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6. 선거인으로 구성된 단체·조직 등의 운영비나 행사비 등을 찬조하는 행위
 7.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② <삭제> ('15.2.12 조문정리)

제21조의2(선거운동제한 위반사실의 신고 및 조사) ①누구든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명에 의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내방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15.2.12 신설)

②제1항의 신고내용이 적정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15.2.12 신설)

③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설치되기 전까지 제1항의 신고접수 및 제2항의 조사·확인은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5.2.12 신설)

④윤리위원장은 선관위가 설치되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과 관련된 신고서류, 조사·확인 내용 일체를 선관위에 이첩하여야 한다. ('15.2.12 신설)

제21조의3(선거운동제한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 ①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조사·확인 결과 위반사실이 입증된 경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결의로 제11조제7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무효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15.2.12 신설)

②선관위는 제1항의 조치결과를 협회 홈페이지 및 건설경제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2.12 신설)

제21조의4(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①선관위는 제21조의 위반사실을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11.3 신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16.11.3 신설)

제22조(소견발표) 선거일 당일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에게 건설업 발전 및 협회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후보당 15분 이내의 연설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정해진 연설 및 투표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중지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 7 장 투 · 개표 및 당선자 결정

제24조(투 · 개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절차 개시 전에 각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씩을 투 ·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하여 투 · 개표 과정에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제5조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를 제외하고 총회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한 것을 확인한 후에 투표절차 개시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회장에 대한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소정의 서식(별지 제5호)에 의

한다. ('15.2.12 조문정리)

③선거인이 투표를 하고자 할 때 선관위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의 것인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장이 출석한 선거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10.13 신설)

⑤선관위는 투표 종료선언 전까지 회의장내에 도착한 선거권자 및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선거권자에 대하여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10.13 신설)

⑥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로 회장으로 선출할 후보자의 성명아래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한다.

제26조(개표) ①선관위는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투·개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의 부합을 확인하고, 유효 및 무효표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 개표토록 하여야 한다.

③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유효 및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관위가 봉인한다.

제27조(투표효력)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인장규정 별표1의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시·도회장 선거는 해당 시·도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이 없는 것
2. 기표가 없거나 기표란 외 기표 또는 2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
4.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0.10.13 신설)
5.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는 등 투표자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것('10.10.13 신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의 일부가 표시되거나 기표의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후보자간 구분선상 또는 기표란 선상에 기표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투표용지가 오손·훼손 또는 기표한 것이 옮겨 묻었으나 소정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8조(재투표) ①총투표자수가 선거인 명부의 날인자수를 초과할 경우 당해 투표절차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초과된 투표수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투표전부가 무효로 된 때 선관위는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당선자 결정 등) ①제26조에 의한 개표결과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구성원 과반수(단, 시·도회장 선거에서 회원전원 총회의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구성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득표의 기초가 되는 출석구성원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권자로 한다. ('10.10.13 개정)

②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순위에 따라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이 앞선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당선의 선포)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1조(재선거) 당선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정관에 의해 선출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와 제21조의3제1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0.10.13 개정, '15.2.12 조문정리)

제32조(보궐선거) 회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기록보존) ①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및 선관위 회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기록을 작성하고,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봉인된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관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 결정으로 지명한 위원 또는 간사가 수행하며, 보관장소는 협회(본회 또는 해당 시·도회) 사무소나 기타 장소로 정한다.

제3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의 선거관례에 따라 처리하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 의결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10.13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선거권자 추천기준

1. 총추천인수

: 총선거권자의 10분의 1 이상(후보자 등록일 현재 기준) 추천

2. 추천서: 선관위가 별지 제1-3호에 따라 교부한 용지에 한정

- 선관위는 선관위 설치 다음날부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인을 날인한 추천서 용지 제공

(별지 제1호 서식)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1.상 호 :

2.성 명 :(한글) (한자)

3.생년월일:

4.주 소:

본인은 2023년 4월25일 실시하는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에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인)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

1. 서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명함판 사진 3매
4. 선거권자 추천서 각 1부
5. 선거비용 기탁금(입금증 등)

(별지 제1-1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금번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후보자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상 호 :

신청인(후보자) : (인)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이 력 서

인적사항

성명		(漢字)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속및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업체현황

업체명			
본사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기타업체소개			

학 력

--

※ 최종학력 증명서 첨부

경 력

--

상훈경력

--

(별지 제1-3 서식)

No.

선거관리
위원장인

후보자 추천서

추천후보자

성 명	업 체 명	주업종 및 등록번호

주) 선거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의거, 선거권자 1인당 2인 이상 중복추천시 후보자 추천서는 모두 무효 처리됨

본인은 대한건설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상기인을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업체명)

(성 명)

(인)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추천인 명단

연번	성명	업체명	주업종및 등록번호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제2호 서식)

NO

후보자 등록증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 선출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시 분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 간 인 >-----

NO

후보자 등록증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 선출 후보자로 등록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시 분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사퇴신고서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접수번호 :

상기 본인은 2023년 4월 25일 실시하는 대한건설협회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를 사퇴합니다.

20 년 월 일

후보자 : (인)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전화)		(E-mail)
신고 일시	20 년 월 일	신고 방법	①직접내방() ②우 편()
신고내용 : 위반자, 위반일시, 발생지역, 위반사실 등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위반사실 입증서류 1부.			

상기 내용을 접수함.

20 년 월 일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25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